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34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김장겸 · 이상희 · 권성동
박충권 · 박덕흠 · 김재섭
안상훈 · 김 건 · 김기현
서천호 · 임이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낮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
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
의3 및 제35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손자녀돌보미는 제외한다.

7. “손자녀돌보미”란 아이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아이의 조부모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중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아이돌봄사의 양성 및 손자녀돌보미의 교육”으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손자녀돌보미의 교육·등록 및 손자녀돌봄수당) ①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다른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와 등록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의 기준, 금액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u>단서 신설</u> >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6.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u>신설</u> >	 5. ----- ----- ----- . 다만, <u>손자녀돌보미는 제외한다.</u>
	 6. (현행과 같음)
	 7. “ <u>손자녀돌보미</u> ”란 <u>아이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아이의 조부모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람</u> 을 말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u>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u>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 ----- <u>아이돌봄사의 양성 및 손자녀</u>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
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돌보미의 교육-----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손자녀돌보미의 교육

·등록 및 손자녀돌봄수당) ①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
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
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의2에 따른 양육수당과 중복하
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
수와 등록의 방법·절차, 제2항
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의 기준, 금액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35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u>으로 정한다.</u>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u>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